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I. 배경

- 최근 동물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물건이나 인형이 아니고 생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동물은 학대 받지 않고 생명으로서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사회적·국민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며 생명으로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보호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며 사람의 아이와도 같이 사랑받고 길러지고 있음
- 하지만, 지난 '16년 5월부터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동물보호자의 무분별한 수술, 주사 등 진료행위로 인한 동물학대(일명, 강아지공장 사건)가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일명,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음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년 12월 30일에 자가진료를 예외로 허용해 놓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 할지라도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처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이 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자가 어느 정도까지 처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사례집’을 작성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II. 범위와 기준

- 본 ‘사례집’은 동물복지 선진국가인 미국, 유럽 등 외국사례에서의 동물보호자 처치수준, 전문가 의견, 국내 동물보호자 등 일반국민의 정서와 공감대, 변호사 자문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으로 검토하였음
- 본 ‘사례집’이 유사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고,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으로 정착 될 것임
- 본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진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함

III. 사례집

- 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례별로 위험도가 다를 수 있기에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나 동물보호자가 공감하는 범위에서 허용
- *해외사례는 자가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동물복지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등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검토함

1 원칙

-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자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이 기르

- 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음
 ■ '동물보호자'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한되며, 동물보호자의 자격이나 권리가 제3자 등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음

2 사례

Q 1. 동물보호자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한가요?

- 처방 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 또는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투약할 수 있음
 -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에 사용할 수 있음
- * cf) 처방대상 동물약품 중 일부제제는 구입 시 처방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 중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약제특성이나 투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약품으로써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후 투약해야 함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종류에 관하여는 수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2~2373)에 문의바랍

Q 2. 동물보호자가 처방대상이 아닌 약을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요?

-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 함

의료법 참고판례

* 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횟수, 행위자의 지식수준, 시술행위로 인한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 동물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없이 일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Q 3.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한가요?

-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투약은 벗이는 방법에 비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으며, 시술 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음으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 의해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함

Q 4. 동물보호자는 그 밖에 어떤 처치행위가 가능할까요?

-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
 *(예시)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세척 등